

제 15 장 경 쟁

제 15.1 조 목적 및 정의

1. 이 장은 공정 경쟁의 촉진과 반경쟁적 관행의 축소를 통하여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이 장의 목적상 반경쟁적 관행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 활동 또는 거래를 말한다.
 - 가. 경쟁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수평적 합의
 - 나. 시장지배력의 남용
 - 다. 사업자 간 반경쟁적인 수직적 합의, 그리고
 - 라.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

제 15.2 조 경쟁 촉진

1. 각 당사국은 그 영역 안의 반경쟁적 관행을 다루고 그러한 관행에 대처하는데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보는 수단 또는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.
2. 그러한 수단 및 조치는 경쟁 및 규제 조치의 시행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 15.3 조 경쟁법의 적용

1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설립된 모든 사업자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 중일 수 있는 일반적 또는 관련 부문별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보장한다.
2. 당사국이 반경쟁적 관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 조치에 따

라 취한 집행활동은 투명성·적시성·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에 일치하여야 한다.

제 15.4 조 경쟁 중립성

1. 각 당사국은 자국 정부가 정부소유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히 정부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사업 활동에 있어 경쟁상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.
2. 이 조는 정부소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적용되고, 비사업적 및 비상업적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제 15.5 조 협의

1. 일방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반경쟁적 관행의 제거를 포함하여, 이 장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한다.
2. 이 조에 따른 협의 중에 각 당사국은 협의 주제가 되는 사안의 관련 측면에 대한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타방 당사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3. 이 장에 따른 상호 협의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된 정보 또는 서류는 비밀로 유지된다.

제 15.6 조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내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하여 경쟁당국 간

협력 및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.

2. 싱가포르의 일반적 경쟁법 발효 후 6월 내에 양 당사국은 협력 및 조정의 범위와 내용과 관련하여 경쟁당국 간에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.

제 15.7 조 투명성

양 당사국은, 법에 규정된 면제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, 공정 경쟁을 다루고 있는 자국 법을 공표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.

제 15.8 조 분쟁해결

1.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적용 가능한 경쟁법 및 규정의 집행에 있어 타방 당사국의 경쟁당국이 행한 조사결과·판정 또는 결정을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하에서 재조사 또는 재심사하거나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.

2. 어느 당사국도 이 장 하에서 또는 이 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

3. 이 장의 규정과 이 협정의 다른 장의 규정이 불합치하거나 상충하는 경우 그러한 불합치 또는 상충의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.